##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07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김문수·김준혁·박지원

허성무 · 정을호 · 고민정

문정복・양문석・이상식

염태영 · 문진석 · 김동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8조의3(직무배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해,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2(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① 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교원의 휴직 및 휴직한 교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 2. 제59조제1항제1호(불임·난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여부

- 3.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 4.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이 끝난 교원이 제58조제1 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임용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교원을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l> <li>&lt;1 설&gt;</li> <li>제58조의3(직무배제) ① 고등학교이하 가급 학교의 장은 교원이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즉시 보고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위해, 특별한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li>&lt;1 절&gt;</li> <li>제59조의2(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li> <li>① 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대한 경우 교원의 휴직 및 휴직한 교원의 복직 후정상근무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li> <li>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의 의</li> </ul>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58조의3(직무배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 해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학교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 간・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① 폭력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 교원의 휴 직 및 휴직한 교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판단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u>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u> <u>을 심의한다.</u>
- 1.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분리조치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보
- 2. 제59조제1항제1호(불임・난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여부
- 3.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가능 여부
- 4.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이 끝난 교원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교육 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통 보받은 심의결과를 해당 교원 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임용권자는 관계 법 령에 따라 해당 교원을 조치하 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

영, 심의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